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룡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45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홍성룡 의원(1명)

찬 성 자 : 최웅식, 김창원, 노승재, 성흠제,
이광호, 박순규, 김종무, 전석기,
김평남, 김제리 의원(10명)

1. 제안이유

- 건설업은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친 서민 지역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어 숙련인력 부족, 외국인 증가, 재해율 증가 등 악순환으로 건설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장기근로를 유도하여 적정한 임금 보장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에 노력한 건설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청년층 유입 증가 및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로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자’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다. 고용개선 지원 유효기간을 2025.12.31.까지로 정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산업과”를 “건설산업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고용개선 지원) ①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
금과 제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
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지역건설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건설산업</u>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을 말한다.</p> <p>2.·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2조 (정의) ----- -----.</p> <p>1. ----- ----- ----- <u>건설산업</u> 또는 ----- -----.</p> <p>2.·3. (현행과 같음)</p> <p>4. “<u>건설사업자</u>”란 「<u>건설산업기본법</u>」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u>건설업을 영위하는 자</u>를 말한다.</p> <p><u>제9조 (고용개선 지원) ①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분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일</u></p>

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 · 제10조 (생략)

제10조 · 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고용개선 지원)제2항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 제3항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 지원하는 고용개선장려금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 지원비(안 제9조제2항)
- 우수 건설사업자 고용개선장려금 지원비(안 제9조제3항)

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발생할 것이나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추계기간을 설정, 물가상승률 미반영
- 서울시 건설공사 사업자의 건설일용근로자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은 50%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른 지침 적용
- 우수 건설사업자 고용개선장려금 지원은 지원금의 최대치인 주휴수당의 50% 지원으로 가정하여 추계
 - ※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른 지침 적용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서울시 안전총괄실 제출 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2020.7.17.)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 건설공사의 직접노무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6호’ (2019.12.26.)에 따라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총공사비의 27%)으로 산정함
 - 연간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제외) 공사비 : 약 1조 8,000억원(공사건수 : 2,500건)
 - 연간 직접노무비 : 1조 8,000억원 × 0.27 = 4,860억원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비는 노무비의 7.835%로 추계

-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3.335%,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4.5%

○ 우수 건설사업자 고용개선장려금 지원비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의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안)에 따라 비용을 추계

- 고용개선장려금 = 주휴수당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1} × 50%

· 주휴수당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은 공사종류·규모·기간별로 구분하여 공사원가 반영시 직접노무비에 곱해지는 요율을 의미하며, 평균값인 약 5%로 가정하여 추계

※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은 1.4로 준용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129,000백만원 (연평균 25,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건강·국민연금보 험료 부담금 지원비(안 제9조제2항)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95,000
	우수 건설사업자 고용개선장려금 지원비(안 제9조제3항)	6,800	6,800	6,800	6,800	6,800	6,800	34,000
	소계(b)	25,800	25,800	25,800	25,800	25,800	25,800	129,000
□ 총 비용(b-a)		25,800	25,800	25,800	25,800	25,800	25,800	129,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윤지민

☎ 02-2180-7945

e-mail : yjm1030@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 지원비
- 우수 건설사업자 고용개선장려금 지원비

2. 세부추계내역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 지원비 ≍ 95,0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건설일용근로자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 지원 비용)
 -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건설일용근로자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 지원 비용
 - = 직접노무비 ×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비율 × 서울시 지원 비율
 - = 486,000,000천원 × 7.835% × 50%
 - = 19,000,000천원
- 우수 건설사업자 고용개선장려금 지원비 ≍ 34,0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우수 건설사업자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비용)
 -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우수 건설사업자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비용
 - = 주휴수당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1} × 서울시 지원 비율
 - = 34,000,000천원 × (1.4-1) × 50%
 - = 6,800,000천원